

의안번호	제 439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종규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8월 19일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종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8 월 19 일

발 의 자 : 박종규, 이광희, 이양섭,
김영주, 박우양, 윤은희
임희무

1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 (안 제8조)

- “3년 이내로 한다.” ⇒ 5년으로 한다.

나. 위탁 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 (안 제8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「충청북도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
라. 협 의 : 복지정책과 협의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3년 이내로 한다.”를 “5년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8조 제3항을 “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따른다.”로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탁계약체결)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<u>3년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위탁계약체결) ② ----- -----<u>5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따른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아동복지법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아동양육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아동보호치료시설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5. 자립지원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6. 아동상담소: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, 치료,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

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9.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

10.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아동가정지원사업: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, 가정, 지역주민에게 상담,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
2. 아동주간보호사업: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
3. 아동전문상담사업: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,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
4. 학대아동보호사업: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5. 공동생활가정사업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6.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: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[시행

일 : 2016.9.23.]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3.>

□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

제4조(입법예고)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 또는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 하는 경우
2.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3.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